결혼중개업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중개업]

'결혼중개업'이란 수수료 · 회비, 그 밖의 금품을 받고 결혼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며,결혼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은 보험가입, 교육이수 및 중개소 확보 등의 요건을 갖추어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를 하거나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해야 합니다.

결혼중개업을 창업하고 운영하다 보면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정말 많은데요. 결혼중개업을 창업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창업부터 운영 그리고 폐업까지 결혼중개업과 관련한 법령을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령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결혼중개업 1
1. 결혼중개업이란 4
1.1. 결혼중개업 알아보기 4
1.1.1. 결혼중개업의 의의 및 종류 4
2. 창업준비 5
2.1. 자격조건 5
2.1.1. 결격사유 확인 5
2.2. 보증보험가입 및 중개소 확보 등 6
2.2.1. 국내결혼중개업 6
2.2.2. 국제결혼중개업 6
2.3. 영업신고 및 등록 8
2.3.1. 국내결혼중개업 영업신고 9
2.3.2.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11
2.4. 사업자등록 14
2.4.1. 사업자등록 14
3. 운영 및 고객관리 17
3.1. 운영 일반원칙 17
3.1.1. 국내·국제결혼중개업 공통사항 17
3.1.2. 국제결혼중개업 특례 20
3.2. 고객관리 23
3.2.1. 국내·국제결혼중개업 공통사항 23
3.2.2. 국제결혼중개업 특례 25
3.3. 직원채용 28
3.3.1. 근로계약 및 4대보험 28
3.4. 손해배상 및 분쟁해결 29
3.4.1. 국내결혼중개업 29
3.4.2. 국제결혼중개업 31
4. 휴업·폐업 및 재개업 33
4.1. 휴업·폐업 및 재개업 신고 33
4.1.1. 휴업·폐업 신고 33
4.1.2. 재개업 신고 34

1. 결혼중개업이란

1.1. 결혼중개업 알아보기

1.1.1. 결혼중개업의 의의 및 종류

결혼중개업이란?

결혼중개업

▪ "결혼중개업"이란 수수료·회비나 그 밖의 금품을 받고 결혼중개를 업(業)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 "결혼중개"란 결혼을 위한 상담 및 알선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결혼중개업자

▪ "결혼중개업자"란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를 하거나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결혼중개업의 종류

국내결혼중개업

▪ "국내결혼중개업"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을 말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국제결혼중개업

▪ "국제결혼중개업"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을 말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2. 창업준비

2.1. 자격조건

2.1.1. 결격사유 확인

결혼중개업 운영·종사자의 결격사유

결격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위의 2. 및 3. 에도 불구하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제228조 및 제287조부터 제294조까지의 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및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범칙금 통고처분을 포함)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5. 국제결혼 중개행위 관련 외국의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을 위반하여 형 또는 행정처분이 확정(형사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을 집행하지 않기로 확정된 경우를 포함)되어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6.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위 1.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는 제외)
7. 임원 중에 위의 1.~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위반 시 제재

▪ 국내결혼중개업

▹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국내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위 6.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호 본문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 다만, 법인의 경우 1개월 이내에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을 개임한 때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습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호 단서).

▪ 국제결혼중개업

▹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국제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호 본문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 다만, 법인의 경우 1개월 이내에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을 개임한 때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습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호 단서).

2.2. 보증보험가입 및 중개소 확보 등

2.2.1. 국내결혼중개업

보증보험 가입

보증보험의 가입

▪ 국내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2천만원 이상(다만,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1천만원을 추가)의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제1호 및 제6조제1항제1호).

▪ 국내결혼중개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해야 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

▪ 국내결혼중개업자는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이 끝날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까지 2천만원 이상(다만,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1천만원을 추가)의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위반 시 제재

▪ 국내결혼중개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4호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 1년 이내에 1회: 영업정지 3개월
- 1년 이내에 2회: 영업정지 6개월
- 1년 이내에 3회 이상: 영업소 폐쇄

중개사무소 확보

중개사무소의 확보

▪ 건축물대장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 또는 일반업무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제2호 전단).

▪ 중개사무소는 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제2호 후단).

> ※ 중개사무소 확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상가건물 임대차』 또는 『부동산 매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2. 국제결혼중개업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교육

전문지식 등 교육이수 의무

▪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의 전문지식, 윤리의식 및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미리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제2항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 2곳 이상의 장소에서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려는 사람 또는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종사자 중 책임자를 지정하여 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4항).

교육기관

▪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국제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교육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위탁하여 실시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교육 위탁기관 등 세부사항」 제2조제1항).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등

▪ 국제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및 별표 3).

교육과목	교육내용	시간	방법
직업윤리 및 인권 보호	-결혼중개업의 사회적 책임 및 직업윤리 -인권침해 사례 및 인권보호, 구제	2	집합교육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 보호 방안	-소비자보호 관계 법령 해설 -소비자 보호 및 구제 방안	1	집합교육
결혼중개업 제도 및 실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해설 -상담 이론 및 상담 실무	2	집합교육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	-국제결혼 당사국의 결혼 관련 법규 및 문화 -다양한 문화의 존중과 이해를 위한 기본 소양	1	집합교육

교육수료증 교부

▪ 교육을 이수한 국제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국제결혼중개업 신규등록 희망자에 한함)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합니다.

> ※ 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 교육 일정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홈페이지(www.kihf.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보유

창업 자본금의 보유

▪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사람은 중개사무소별로 1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함)을 보유해야 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제1항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의2).

▪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등록 이후에도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계속해서 보유해야 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제2항).

위반 시 제재

▪ 국제결혼중개업자가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계속해서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3호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보증보험 가입

보증보험의 가입

▪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5천만원 이상(단,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2천만원을 추가)의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 및 제6조제1항제2호).

▪ 국제결혼중개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해야 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

▪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이 끝날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까지 5천만원 이상(단,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2천만원을 추가)의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위반 시 제재

▪ 국제결혼중개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4호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중개사무소 확보

중개사무소의 확보

▪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은 건축물 대장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 또는 일반업무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 전단).

▪ 중개사무소는 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 후단).

> ※ 중개사무소 확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상가건물 임대차』 또는 『부동산 매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 영업신고 및 등록

2.3.1. 국내결혼중개업 영업신고

국내결혼중개업 신고절차 등

신고내용

▪ 국내결혼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기준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 이하 같음)·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전단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 건축물대장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이 경우 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해야 함)

> ※ 국내결혼중개업 신고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창업준비-보증보험가입 및 중개소 확보 등-국내결혼중개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를 갖추어 주된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중개사무소가 2곳 이상인 때에는 중개사무소별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 국내결혼중개업 신고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 신고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함)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나 공증인이 공증한 신고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단,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로 영사관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음]

> ※ 국내결혼중개업 운영·종사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창업준비-자격조건-결격사유 확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종사자 명단
-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단, 보증보험회사가 보증 사실을 직접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건축물대장에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국내결혼중개업의 영업신고(신규)를 하려는 사람은 3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1호가목).

신고수리여부 통지

▪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신고필증의 교부

▪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국내결혼중개업 신고필증(「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을 내주어야 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

위반 시 제재

▪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내결혼중개업을 신고한 경우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 신고를 하지 않고 국내결혼중개업을 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한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 해당 영업소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시물의 제거·삭제
- 해당 영업소가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 영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물 또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국내결혼중개업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1호·제2호).

- 이 때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형이 부과되지 않습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신고필증 재발급

▪ 국내결혼중개업자는 신고필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를 갖추어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 국내결혼중개업 신고필증 재발급신청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신고필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신고필증

변경신고

변경신고 사유

▪ 국내결혼중개업자는 신고한 사항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후단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 중개사무소의 상호
- 중개사무소의 수
-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 중개사무소 대표자 및 종사자
-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 보증보험에 관한 사항

변경신고 방법

▪ 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변경신고서를 포함)를 갖추어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

- 국내결혼중개업 변경신고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신고필증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행정처분 내용 고지 확인서(양도·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한 변경만 해당)

위반 시 제재

▪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국내결혼중개업자가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호).

▪ 변경신고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음에도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1호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3.2.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등록내용

▪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기준을 갖추어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 이하 같음)·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등록해야 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전단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국제결혼중개업자 등의 교육수료
- 자본금을 보유할 것
-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 건축물대장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이 경우

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해야 함)

>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창업준비-보증보험가입 및 중개소 확보 등-국제결혼중개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방법

▪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를 갖추어 주된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중개사무소가 2곳 이상인 때에는 중개사무소별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신청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함)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나 공증인이 공증한 신고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단,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로 영사관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음]
- 종사자 명단
- 건축물대장에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교육수료증 사본
-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함)을 1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재산목록(「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단, 보증보험회사가 보증 사실을 직접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국제결혼중개업의 영업등록(신규)을 하려는 사람은 3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2호가목).

등록증의 교부

▪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한 사람에 대하여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증(「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을 내주어야 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위반 시 제재

▪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 등록을 하지 않고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거나, 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한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 해당 영업소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시물의 제거·삭제
- 해당 영업소가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 영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물 또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하거나, 등록을 하지 않고 국제결혼중개업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제2호).

- 이 때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형이 부과되지 않습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록증 재발급

▪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를 갖추어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등록증

변경등록

변경등록 사유

▪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등록한 사항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후단,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제6호).

- 중개사무소의 상호
- 중개사무소의 수
-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 중개사무소 대표자 및 종사자
-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 보증보험에 관한 사항
-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함)을 1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재산목록(「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변경등록 방법

▪ 변경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변경신청서를 포함)를 갖추어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

- 국제결혼중개업 변경신청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등록증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행정처분 내용 고지 확인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위반 시 제재

▪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호).

▪ 변경등록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음에도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2호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4. 사업자등록

2.4.1.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의 개념

▪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 제11조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로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참조).

> **Q.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결혼중개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
> A.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불이익이 따릅니다.
>
> 1. 고객에게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불가능하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 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는 미등록으로 보아 미등록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3.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못한 사업장의 거래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 <국세청-국세정책/제도-사업자등록 안내-자주 묻는 질문 답변-6번째 Q&A 참조>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2항).

▪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함)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 사업자등록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통해 인터넷상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신청기한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에 사업 개시일부터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를 더하여 가산세가 부과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제1호).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결혼중개업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 세무서나 그 밖에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에 제출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제3항).

- 사업자등록 신청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중 1부(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1부
-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건물에 한함) 1부
-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로서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대한 위의 첨부서류 및 사업장 소재지·업태·종목 등이 적힌 서류
- 법정대리인 동의서(사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로서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대한 위의 첨부서류 및 사업장 소재지·업태·종목 등이 적힌 서류를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제3항).

사업자등록증 발급

▪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증(「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을 신청일부터 2일 이내(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노동은 산정에서 제외하며,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함)에 발급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 ※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보-사업자등록안내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운영 및 고객관리

3.1. 운영 일반원칙

3.1.1. 국내·국제결혼중개업 공통사항

공통적 금지사항

겸업금지

▪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사람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사업주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는 결혼중개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이를 위반하여 결혼중개업자가 직업소개사업, 근로자파견사업 또는 해외이주알선업을 겸업한 경우에는 다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3호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1년 이내에 1회	1년 이내에 2회	1년 이내에 3회 이상
국내결혼중개업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년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취소

명의대여 금지

▪ 결혼중개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결혼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결혼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에는 다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4호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1년 이내에 1회	1년 이내에 2회	1년 이내에 3회 이상
국내결혼중개업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취소	—	—

▹ 결혼중개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결혼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3호).

√ 이 때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금형이 부과되지 않습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개인정보 누설 금지

▪ 결혼중개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를 통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결혼중개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결혼중개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9호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1년 이내에 1회	1년 이내에 2회	1년 이내에 3회 이상
국내결혼중개업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취소

▹ 결혼중개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결혼중개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10호).

√ 이 때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금형이 부과되지 않습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광고 시 유의사항

결혼중개광고

▪ 결혼중개에 관한 광고는 결혼중개업자만 할 수 있습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결혼중개업의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않고 결혼중개에 관한 광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8호).

√ 이 때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금형이 부과되지 않습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신고번호 및 등록번호 포함

▪ 결혼중개업자가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국내결혼중개업자는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번호를,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번호를 포함해야 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가 표시·광고를 할 때 신고번호나 등록번호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호).

거짓·과장된 표시·광고 및 거짓 정보 제공 금지

▪ 결혼중개업자는 거짓·과장되거나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 ※ “표시”란 결혼중개서비스에 관하여 이용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중개사무소 등의 게시물 또는 회원권 등에 쓰거나 붙인 것을 말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
> ※ “광고”란 결혼중개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정기간행물, 인터넷신문, 방송, 전기통신이나 그 밖의 수단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 ※ 거짓·과장된 표시·광고의 범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거짓 또는 과장되거나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광고하거나 결혼중개업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다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6호·제17호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table>
<tr><th></th><th>1년 이내에 1회</th><th>1년 이내에 2회</th><th>1년 이내에 3회 이상</th></tr>
<tr><td>국내결혼중개업</td><td rowspan="2">영업정지 1개월</td><td rowspan="2">영업정지 3개월</td><td>영업정지 6개월</td></tr>
<tr><td>국제결혼중개업</td><td>등록취소</td></tr>
</table>

▹ 결혼중개업자가 거짓·과장되거나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광고하거나 결혼중개업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6호 및 제7호).

√ 이 때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금형이 부과되지 않습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게시사항

중개사무소

▪ 신고필증·등록증 등의 게시

▹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업 수수료·회비 등을 기재한 표,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및 보증보험 증권을 해당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

▪ 장부 등의 비치

▹ 결혼중개업자는 다음의 장부·대장(전자문서로 된 장부·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음)을 작성하여 5년 동안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다만, 장부·대장의 서식이 해당 사업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 종사자명부(「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결혼중개 회원명부(「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인터넷 홈페이지

▪ 결혼중개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누구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3항).

1. 상호와 대표자의 성명
2.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3. 사업자등록번호
4. 중개사무소 소재지의 주소 및 전화번호
5. 결혼중개업 수수료·회비 등을 기재한 표
6. 이용약관
7. 보증보험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절차

▪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결혼중개업자는 위의 사항을 누구든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5.부터 7.까지의 사항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및 제4항).

위반 시 제재

▪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가 신고필증·등록증 등 위의 게시사항을 게시하지 않거나, 장부 등의 자료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호 및 제6호).

▪ 이를 위반하여 신고필증·등록증 등 위의 게시사항을 게시하지 않거나, 장부 등의 자료를 비치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제2호·제3호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1.2. 국제결혼중개업 특례

금지사항

부정한 방법의 모집·알선 금지

▪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제결혼 대상자를 모집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5제1호).

부당한 금품 등의 징수 금지

▪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부당한 수수료·회비,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5제2호).

※ 위반 시 제재

▪ 국제결혼중개업자가 부정한 방법의 모집·알선 행위나 부당한 금품 등의 징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4호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 1년 이내에 1회: 영업정지 3개월
- 1년 이내에 2회: 영업정지 6개월
- 1년 이내에 3회 이상: 등록취소

▪ 부정한 방법의 모집·알선 행위나 부당한 금품 등의 징수행위를 한 국제결혼중개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5호).

- 이 때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금형이 부과되지 않습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미성년자 소개 금지

▪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하는 경우에 18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소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1호).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 소개 등의 금지

▪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하는 경우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호부터 제4호까지).

- 이용자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는 행위
-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명 이상의 이용자에게 2명 이상의 상대방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소개하는 행위
-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2명 이상의 외국인을 같은 장소에 기숙(寄宿)시키는 행위

※ 위반 시 제재

▪ 국제결혼중개업자가 미성년자를 소개하거나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 소개 등 위의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결혼중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8호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 1년 이내에 1회: 영업정지 3개월

- 1년 이내에 2회: 영업정지 6개월
- 1년 이내에 3회 이상: 등록취소

▪ 미성년자를 소개하거나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 소개 등 위의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결혼중개 행위를 한 국제결혼중개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9호).

- 이 때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금형이 부과되지 않습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외국 현지법령 준수

외국 현지법령의 준수

▪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외국 현지에서 국제결혼중개를 하는 경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외국 현지 형사법령 및 행정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 외교부장관은 외국 현지에서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외국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을 위반한 경우 관련 내용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전단).

위반 시 제재

▪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외국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을 위반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된 경우에는 다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5호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1년 이내에 1회	1년 이내에 2회	1년 이내에 3회 이상
외국 현지 형사법령 위반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
외국 현지 행정법령 위반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업무제휴

외국 현지 활동 업체와의 업무제휴

▪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를 하면서 결혼당사자의 모집 등과 관련하여 외국 현지에서 활동하는 업체 등과 업무제휴를 할 때에는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업무제휴를 하는 업체 등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2항).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결혼중개계약서의 작성 등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외국 현지 법령의 준수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거짓·과장된 표시·광고의 금지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호

실적 등의 보고

결혼중개실적 등의 보고

▪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매년 전년도의 결혼중개 실적 등을 국제결혼 중개실적 보고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2).

3.2. 고객관리

3.2.1. 국내·국제결혼중개업 공통사항

결혼중개 계약 체결

계약 체결 방법

▪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수수료·회비, 그 밖의 금품을 이용자에게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전단).

- 국내결혼중개업자: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
- 국제결혼중개업자: 서면

※ 이를 위반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5호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1년 이내에 1회	1년 이내에 2회	1년 이내에 3회 이상
국내결혼중개업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취소	—

▪ 결혼중개업자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기재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 이를 위반하여 계약서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다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8호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1년 이내에 1회	1년 이내에 2회	1년 이내에 3회 이상
국내결혼중개업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년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취소	—

계약서의 내용

▪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 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약관을 정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약관의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약관을 기재한 서면을 포함)를 이용자에게 내주어야 한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 수수료·회비 등에 관한 사항
- 해약 또는 해지할 경우 수수료·회비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
- 결혼중개업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 결혼중개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제공방법, 기간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결혼중개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 이를 위반하여 위의 계약서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계약서를 내주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6호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 1년 이내에 1회: 영업정지 15일

√ 1년 이내에 2회: 영업정지 1개월

√ 1년 이내에 3회 이상: 영업정지 2개월

▪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결혼중개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결혼중개업에 관한 표준 계약서를 마련하고 결혼중개업자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 국내결혼중개업: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
- 국제결혼중개업: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 결혼중개업자는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된 번역본을 제공해야 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계약 체결 시 의무사항

설명의무

▪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계약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설명해야 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후단).

계약서 등의 보존 및 제공의무

▪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 계약의 체결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 등 다음의 관련 서류를 5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제10조의4제1항제1호·제3호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 결혼중개계약서
- 그 밖의 혼인 관련 서류

※ 이를 위반하여 결혼중개 계약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7호·제13호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 1년 이내에 1회: 영업정지 1개월

√ 1년 이내에 2회: 영업정지 3개월

√ 1년 이내에 3회 이상: 영업정지 6개월

▪ 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나 결혼중개의 상대방이 결혼중개 계약 체결에 관한 계약서 및 관련 서류의 열람·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제2항).

3.2.2. 국제결혼중개업 특례

신상정보 제공

신상정보 제공 및 필요한 서류

▪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이하 "상대방"이라 함)으로부터 다음의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의 신상정보(증빙서류를 포함)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 때 1., 2., 및 4.의 서류는 상대국에서 통용되는 유사한 입증자료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본문, 제2항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1. 혼인경력: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2. 건강상태(후천성면역결핍증, 성병 감염 및 정신질환 여부를 포함):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정신건강의학과가 설치되지 않은 의료기관의 경우 정신계통의 검사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협조를 얻어 실시해야 함)
3. 직업: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농사실확인서 또는 그 밖에 직업이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범죄경력(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 알선·강요 관련 범죄경력 및 범죄경력조회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으로 한정): 범죄경력조회 회신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3서식)
5. 그 밖에 상대국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 다만, 이용자 또는 상대방이 외국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공증담당영사로부터 확인을 받거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단서).

▪ 위반 시 제재

▸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위반행위에 따라 다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1년 이내에 1회	1년 이내에 2회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신상정보(증빙서류를 포함)를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신상정보가 거짓임을 알면서도 이를 제공하여 중개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과장된 개인신상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 사항을 누락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 이를 위반하여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거나, 고의로 거짓된 신상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4호).

√ 이 때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금형이 부과되지 않습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신상정보 제공 방법

▪ 국제결혼중개업자는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신상정보 관련 서류(증빙서류를 포함)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본문).

▪ 신상정보는 그 정보를 제공받는 이용자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해야 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3항).

신상정보 확인서 및 서면동의서 작성

▪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신상정보를 바탕으로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4서식)를 작성한 후 이용자와 상대방으로부터 그 작성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신상정보 제공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2항).

▪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와 위의 1.부터 5.까지에 따른 서류(주민등록번호는 삭제함)를 이용자와 상대방이 각각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제공한 후 이용자와 상대방이 모두 만남에 동의하는 서면동의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5서식)를 작성한 이후에 만남을 주선해야 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3항).

신상정보 제공 거부 등에 따른 결혼중개 거부

▪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가 위의 1.부터 5.까지에 따른 서류 제출 또는 신상정보 제공에 대한 서면 동의를 거부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결혼중개를 거부해야 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4항).

신상정보 확인서 등의 보존 및 제공의무

▪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 계약의 체결에 따라 작성된 신상정보 확인서 등 다음의 관련 서류를 5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제1항제2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4서식)

▹ 그 밖의 관련 증빙서류

※ 이를 위반하여 국제결혼중개 계약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3호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 1년 이내에 1회: 영업정지 1개월

√ 1년 이내에 2회: 영업정지 3개월

√ 1년 이내에 3회 이상: 영업정지 6개월

▪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나 결혼중개의 상대방이 결혼중개 계약의 체결에 따라 작성된 신상정보 확인서 및 관련 서류의 열람·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제2항).

통역·번역서비스의 제공

통역·번역서비스의 제공의무

▪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와 상대방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역·번역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제1항).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통역·번역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2호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 1년 이내에 1회: 영업정지 3개월

√ 1년 이내에 2회: 영업정지 6개월

√ 1년 이내에 3회 이상: 등록취소

통역·번역서비스의 제공방법

▪ 국제결혼중개업자는 통역·번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때에는 직접 또는 통역·번역 전문업체를 이용하여 통역·번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3제1항).

▪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용자에게 통역·번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때에는 국어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용자가 지정한 언어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언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3제2항).

▪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의 상대방에게 통역·번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때에는 상대방 국가의 언어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고, 상대방이 지정한 언어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언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3제3항).

3.3. 직원채용

3.3.1. 근로계약 및 4대보험

자격요건 확인

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

▪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 ※ 결혼중개업 운영·종사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창업준비-자격조건-결격사유 확인>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체결

근로계약이란?

▪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명시해야 하며, 사용자는 다음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함)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93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 소정근로시간
- 휴일
- 연차 유급휴가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 「근로기준법」에 따라 작성·신고된 취업규칙(사용자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

4대보험 가입

4대보험 가입 의무

▪ “4대 사회보험”이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을 말하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국민연금법」 제8조,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본문, 「고용보험법」 제8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본문).

※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 I (업무상 재해)』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II (보험급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4대 사회보험 제도는 폐질·사망·노령 등에 대한 연금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제도를 말합니다(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대사회보험 소개-사회보험 정의).

※ 4대보험 가입 관련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링크

※ 4대보험 가입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www.4insu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4. 손해배상 및 분쟁해결

3.4.1. 국내결혼중개업

손해배상책임

손해배상책임

▪ 국내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결혼중개업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함)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보증보험금 지급

▪ 이용자는 국내결혼중개업자가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결혼중개업자가 가입한 보증보험에 대해 보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 이용자는 보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려면 이용자와 결혼중개업자 간의 손해배상합의서(공정증서),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정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 국내결혼중개업자는 보증보험금으로 해당 결혼중개와 관련된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상을 보장할 수 있도록 15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고, 그 증명서류를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7조제3항).

※ 국내결혼중개업 보증보험 가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 창업준비-보증보험가입 및 중개소 확보 등-국내결혼중개업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쟁발생 시 해결기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및 해지

▪ 국내결혼중개업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분쟁에 대한 해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7호 ①번).

분쟁유형	해결기준
회원가입계약 성립 후 정보(프로필) 제공 전에 해지된 경우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10% 배상
정보(프로필) 제공 후 만남일자 확정 전에 해지된 경우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15% 배상
만남일자 확정 후에 해지된 경우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 배상
1회 만남 후 해지된 경우	가입비×(잔여 횟수/총횟수)+가입비의 20% 환급
첫 번째 만난 상대방이 계약서상 기재된 소비자의 우선 희망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해지된 경우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 배상

※ “가입비”란 계약금, 연회비 등 명칭에 관계없이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지급한 일체의 금액을 말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7호 ①번).

※ “귀책사유”란 사업자가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사항[예: 결혼정보, 직업, 학력, 병력(病歷) 등]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허위로 제공한 경우, 관리소홀(3개월 내 1회도 만남을 주선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상 기재한 우선 희망 조건(종교, 직업 등 객관적인 내용에 한정함)에 부적합한 상대를 소개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7호 ①번).

※ 횟수 대신 기간으로 계약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 일까지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정산하고 해지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가입비의 20%를 배상해야 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7호 ①번).

이용자의 계약해제 및 해지

▪ 국내결혼중개업자와 계약한 이용자의 의사에 따른 분쟁에 대한 해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7호 ①번).

분쟁유형	해결기준
회원가입계약 성립 후 정보(프로필) 제공 전에 해지된 경우	가입비의 90% 환급
정보(프로필) 제공 후 만남일자 확정 전에 해지된 경우	가입비의 85% 환급
만남일자 확정 후에 해지된 경우	가입비의 80% 환급
1회 만남 후 해지된 경우	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횟수)환급

3.4.2. 국제결혼중개업

손해배상책임

손해배상책임

▪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결혼중개업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함)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본문).

※ 다만,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단서).

보증보험금 지급

▪ 이용자는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가입한 보증보험에 대해 보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 이용자는 보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려면 이용자와 결혼중개업자 간의 손해배상합의서(공정증서),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정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 국내결혼중개업자는 보증보험금으로 해당 결혼중개와 관련된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상을 보장할 수 있도록 15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고, 그 증명서류를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7조제3항).

> ※ 국제결혼중개업 보증보험 가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 창업준비-보증보험가입 및 중개소 확보 등-국제결혼중개업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쟁발생 시 해결기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 국제결혼중개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결혼중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게 되는 경우에는 ① 손해배상을 하거나, ②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추가 비용의 부담

없이 국제결혼중개를 다시 이행해야 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시행) 별표 2 제4호].

이용자의 의사로 인한 계약해지

▪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계약한 이용자의 의사에 따른 계약해지에 대한 환불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4호).

분쟁유형	해결기준
계약체결 후 국제결혼 행사 일정이 확정되기 전에 해지할 경우	총비용 중 중개수수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이용자 부담
국제결혼 행사일정 확정 이후 국제결혼 상대국가로 출국하기 전에 해지할 경우	총비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이용자 부담
국제결혼 상대국가로 출국한 이후 맞선 보기 전에 해지할 경우	총비용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이용자 부담
상대 국가에서 맞선 이후 해지할 경우	총비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용자 부담
상대 국가에서 결혼이 성사된 이후 해지할 경우	총비용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이용자 부담
결혼을 성사하고 국내에 입국한 이후 해지할 경우	총비용 전액 이용자 부담

※ 비용을 사업자가 이미 수수한 경우에 사업자는 이미 수수한 비용에서 이용자 부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용자에게 환급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4호).

4. 휴업·폐업 및 재개업

4.1. 휴업·폐업 및 재개업 신고

4.1.1. 휴업·폐업 신고

결혼중개업 휴업·폐업 신고

신고절차

▪ 결혼중개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전단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 국내결혼중개업국제결혼중개업(휴업, 폐업)신고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신고필증(국내결혼중개업) 또는 등록증(국제결혼중개업) 1부, 다만,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서(폐업신고만 해당)를 제출해야 합니다.
- 결혼중개업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 종사자 명부 및 회원 명부 1부(폐업인 경우에만 해당)

▪ 위반 시 제재

-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업을 휴업 또는 폐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호).
-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휴업 또는 폐업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제1호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신고효력

▪ 폐업을 신고한 경우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또는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후단).

▪ 다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국내결혼중개업 신고·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의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단서).

▪ 휴업한 결혼중개업자가 휴업기간 종료 후 1년이 지나도 재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폐업한 것으로 봅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사업자등록에 대한 휴업·폐업신고

휴업·폐업신고

▪ 결혼중개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휴업(폐업)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를 지체 없이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전단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 사업자의 인적사항
- 휴업 연월일 또는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

▹ 그 밖의 참고 사항

▪ 결혼중개업자가 폐업을 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 결혼중개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에 폐업연월일과 그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영업에 대한 폐업신고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의 관계

▪ 영업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려는 결혼중개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서류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해야 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3항).

▹ 국내결혼중개업국제결혼중개업 폐업신고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폐업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 송부한 경우에는 국내결혼중개업 및 국제결혼중개업 폐업신고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가 제출된 것으로 봅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4항).

> ※ 휴업·폐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국세정보 사업자등록안내 휴·폐업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1.2. 재개업 신고

결혼중개업 재개업 신고

신고절차

▪ 결혼중개업자가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전단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 국내결혼중개업국제결혼중개업 재개업 신고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신고필증(국내결혼중개업) 또는 등록증(국제결혼중개업) 1부

▪ 위반 시 제재

▹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가 영업을 재개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호).

▹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제1호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신고효력

▪ 결혼중개업의 재개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필증(국내결혼중개업) 또는 등록증(국제결혼중개업)을 해당 결혼중개업자에게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